## < 변경 대비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트리플알파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]

2. 변경시행일: 2022.04.13

3. 주요 정정사항 :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및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 등

## [신탁계약서]: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

정정 전	정정 후	
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	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	
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	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	
정한다.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2항의	정한다.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2항의	
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상</u> 에 계상된 투	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상</u> 에 계상된 투	
자신탁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	자신탁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	
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	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	
자산총액]"이라 한다)을 그 공고・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[당	자산총액]"이라 한다)을 그 공고・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[당	
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	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	
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	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	
한다.	한다.	
② ~ ③ <생 략>	② ~ ③ <현행과 같음>	
제32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	제32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	
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	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	
한다.	한다.	
1. <u>대차대조표</u>	1. <u>재무상태표</u>	
2. ~ 3. <생 략>	2. ~ 3. <현행과 같음>	
② <생 략>	② <현행과 같음>	
제39조(투자신탁보수) ① <생 략>	제39조(투자신탁보수) ① <현행과 같음>	
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	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	
최초 설정일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	최초 설정일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	
신탁보수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를 매일 <u>대차대조표상</u>	신탁보수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를 매일 <u>재무상태표상</u>	
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	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	
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	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	
서 인출한다.	서 인출한다.	
1. ~ 3. <생 략>	1. ~ 3. <현행과 같음>	
③ <생 략>	③ <현행과 같음>	

## [(간이)투자설명서]: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및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 등

항 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	
	기업공시서식	-	- 총보수・비용 추가 등
	작성기준 개정사항		- 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 등

	반영 및 정기갱신					
제1부. 모집 또는 매	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		
2. 집합투자기구의	기업공시서식	<신 설>	-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: X			
종류 및 형태	작성기준 개정사항					
	반영					
제2부. 집합투자기구	에 관한 사항					
5. 운용전문인력	기준일 현재	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		
	갱신					
8. 집합투자기구의	자본시장법(시행령)	- 채권 :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	- 채권 :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			
투자대상	개정사항 반영	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	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			
[모투자신탁의		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	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			
투자대상]		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	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			
- 유리트리플알파		이 BBB-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 및	가등급이 BBB-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			
증권모투자신탁[주		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	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			
식혼합]		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<u>주택</u>	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			
가. 투자대상		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	사채 및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 에 따라			
		<u>융공사법</u> 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	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			
		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	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)			
		니다)				
		- 자산유동화증권 : 자산유동화에 관한	- 자산유동화증권 : 자산유동화에 관한			
		  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	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			
		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	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			
		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	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			
		_   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	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			
		   택저당증권				
나. 투자제한		  - 동일종목 투자	  - 동일종목 투자			
		  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	  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			
		   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직접 법률에 따라	   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직접 법률에			
		  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법시행규	  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법			
		│	  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			
		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가 발행한 채권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			
		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	' ' ' ' ' ' ' ' ' ' ' ' ' ' ' ' ' ' '			
		<u></u>	''- '' '' '' '' '' '' '' '' '' '' '' ''			
		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	- 1000 = 1000 + 1000 + 1000 + 1000   1000			
		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	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			
		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	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			
		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	권을 말한다),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			
		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	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			
		한다),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	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			
		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	타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			
		= 기크리아크 비용에 찍는 요용시간에	그러지 미국은 예쁜에 무워보고 사건			

## 유리자산운용

		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	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
		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	
		투자하는 경우	
10. 집합투자기구	최근 결산일 기준	2.90%	2.97%
의 투자위험	이전 3년간 주간수		
라. 이 집합투자기	익률 변동성		
구에 적합한 투자	(연환산)		
자 유형			
12.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	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	- 산정방법 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상</u> 에 계상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 까지 계산한다.	- 산정방법 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 은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상</u> 에 계상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.
13. 보수 및	정기갱신	- -	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
수수료에 관한 사항			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정기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
2. 연도별 설정 및			
환매 현황			
3. 집합투자기구의			
운용실적			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	기준일 현재	-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관한 사항	갱신		

<끝>.